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전용기 · 문진석 · 이건태
정준호 · 이연희 · 이학영
송재봉 · 박홍근 · 진성준
복기왕 · 최혁진 · 김주영
조정식 · 윤준병 · 안태준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.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“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”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.

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,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.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,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. 반면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

를」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·공시하여 관계인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).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대행실적을”을 “대행실적 및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까지에”를 “제5항까지에”로, “대행실적 등의”를 “대행실적, 평가결과 등의”로 한다.
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실적을 토대로 해당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